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140
----------	------

2019년 12월 2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출일자 : 2019년 10월 16일

다. 회부일자 : 2019년 10월 22일

라. 상정결과 : 제29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8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9년 12월 17일, 상정·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제3항)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등
- 예산조치 : 협의완료
-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경욱)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 결제시스템(이하 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1) 시립체육시설의 제로페이 도입

- 제로페이는 판매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계좌이체 기반의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로 소상공인<sup>1)</sup>들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상공인을 위해 시작된 제로페이는 초반에 실적이 저조하여 “0페이”라고 불렸으며, 자치구 공무원들에게 가맹점 모집을 할당하고 제로페이 실적과 연결해 특별교부금 300억 원을 25개 자치구에 차등 지급하기로 하여 “관제(官製)페이”라는 오명도 얻게 됨.

---

1)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에 업종별 3년 평균 매출 10억~120억원 이하인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당초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는 바람직하나 카드만 건네면 결제가 되는 것과 달리 소비자가 앱을 열고 매장에 있는 QR코드를 찍어 금액을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서울시 공무원에게 제로페이로 복지포인트를 지급(직급별 상이하게 할당)하고 공기업담당관실이 서울교통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서울의료원 등 산하기관들에게 '복지포인트의 제로페이 사용' 공문을 발송하는 등 제로페이 성과를 위해 무리하게 민관을 동원한다는 비판이 있었으나

우리 상임위원회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립체육시설의 입장료는 100분의 30, 개인연습사용료는 100분의 10,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는 100분의 5 감면할 수 있도록 의결함('19. 4.).

< 시립체육시설 입장료 및 사용료(수강료) 감면 >

구 분	시 설 별	감면 前	감면 後
입장료 (30%)	서울월드컵경기장	1,000원	700원
	장충, 고척돔, 잠실주경기장	500원	350원
개인연습사용료(10%)		1,000원 ~ 5,000원	900원 ~ 4,500원
프로그램수강료(5%)		22,500원 ~ 100,000원	21,375원 ~ 95,000원

(2) 시립체육시설의 제로페이 할인 추진 현황

- 시립체육시설의 제로페이 도입 이후 5개월(5월~9월)간 총 901건 (3,263만원)이 제로페이를 결제되었고 중복할인을 제외한 순수 제로페이 할인은 813건으로 약 184만원의 감면 혜택(세입 손실액)이 발생함.

당초 한시적인 감면혜택을 위해 추계한 8개월분의 손실액은 약 1천 3백만원(월 평균 약 163만원)이었으나 실제 손실액은 약 1/8에 불과함.

- 동 조례안은 대부분의 시민이 제로페이를 공공시설에서 처음 접하고 있어 시립체육시설과 같은 공공시설의 이용료, 사용료 등 감면 혜택을 연장하고자 하나, 제로페이 정책은 공공의 영역이 아닌 민간 결제 사업자들의 영역을 침범하여 시장 경제 논리에 어긋난다는 비판과

소상공인들의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라는 취지와 달리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아닌 시립체육시설 운영자인 서울시설공단, 서울시체육회, 각 자치구 시설공단 등의 손실액을 보전해주면서 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전히 공감하기 어려움.

제로페이의 확산과 정착이라는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본래의 목적을 퇴색하고 옥상옥(屋上屋)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시립체육시설의 제로페이 감면은 그 손실액이 미미(연간 440만원)할지라도 감면 적용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은 적은 것으로 사료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칙 < 제7118호, 2019. 5. 2.>		부칙 < 제7118호, 2019. 5. 2.>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제9조 제3항제3호 및 제10조제1호마목, 제10조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 ----- -----		2020년 12월 31일-----.

- 하지만 서울시가 운영하는 전체 공공시설에 대한 제로페이 감면의 경우, 19개의 조례 개정안이 여러 상임위에 제출되어 심사되므로 서울시 전체 시설 운영 방침에 통일적으로 적용될 필요성이 있음.

6.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7. 토론요지 : 없음.

8.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40
----------	------

제출년월일 : 2019년 10월 1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 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등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2) 입법예고(2019. 9. 25. ~ 10. 15.) 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도 첨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조례 제7118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lt; 제7118호, 2019. 5. 2.&gt;</p> <p>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제9조 제3항제3호 및 제10조제1호마목, 제10조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은 <u>2019년 12월 31일까지</u> 효력을 가진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lt; 제7118호, 2019. 5. 2.&gt;</p> <p>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 ----- ----- <u>2020년 12월 31일</u>-----.</p>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9조 제3항제3호, 제10조제1호마목, 제10조제2호마목에 따른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 결제 할인을 부칙 2조에서 2020년 말까지 연장함에 따라 재정수입의 감소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 감면손실액 산출 = '19년 제로페이 이용료 1달 평균 감면액 × 12개월  
 (단위 : 천원)

구 분	'19. 5월~9월 제로페이 할인액	1달 평균 할인액	'20년 할인 예상액	비고
금 액	1,836	367	4,404	입장료 및 사용료는 '19년과 동일

4. 작성자

- 서울특별시 체육정책과 김미영 (02-2133-2682)